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3..76.41

〈일반논문〉

朝鮮時代 非士族 喪禮의 정착 양상과 그 성격

김 진 우 *

〈목차〉

Ⅰ. 머리말
Ⅱ. 非士族 喪禮의 제정과 차등성
Ⅲ. 非士族의 차등적 喪禮 실천과 원인
Ⅳ.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非士族의 喪禮의 정착 양상과 그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비사족 상례 관련 법제와 실제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비사족 상례는 유교 상례이면서 삼년상이다. 여기에는 보편성과 차등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유교 상례의 도입 과정에서 두 특성은 상충하기 마련인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중종대 비사족 삼년상 논의다.

논의는 비사족의 삼년상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요약하면 찬성하는 측은 이를 허용하여 국왕 중심의 질서를 정립하고자 하였고, 반대하는 측은 신분제를 강조하여 사족과 비사족이 삼년상을 같이 실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비사족 가운데 삼년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년상을 치르게 하자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가 부분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사족의 비사족 상례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차등성이 고수되었다.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교문화연구부 전임연구원

이에 이후에도 비사족은 유교 상례를 차등적으로 실천하였다. 그 사례는 네 유형으로 知禮, 至誠, 知禮+至誠, 희생으로 나뉜다. 조선시대 비사족의 상례 실천 사례들은 예의 하향화와 이들의 사족 문화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상례가 사족에 비해 불완전하고 차등적인 까닭은 비사족이 신분적 한계를 허물지 못한 상황과 사족이 비사족이 유교 상례를 온전하게 치르는 것을 신분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라 여겨 지양하는 경향 때문이다. 결국 조선 사회에서 유교 상례가 비사족에게 하향화되어 사족과 비사족이 유교 의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는 아래로 서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예의 차등성이 고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비사족, 유교, 상례, 삼년상, 차등성

I. 머리말

전근대 조선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은 대체로 王室, 士族, 非士族[1] 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 사회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는 왕실과 사족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비사족에게 많이 주목하지 못하였다. 다각도로 조선 사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왕실, 사족, 비사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현재까지 비사족 관련 연구는 자료의 부

1) 본고에서 논하는 非士族이라는 용어는 사족이 아닌 계층, 다시 말해 사족 이외의 中人, 常民을 가리키는 것이다.

재 혹은 부족으로 인해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룰 儒敎 喪禮는 전근대 유교권 국가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매개다. 그 까닭은 유교 상례에 내재된 종법이라는 사회 기본 구조 때문이다. 약술하면 종법은 전근대 사회의 근간으로, 嫡長子를 중심으로 구현되는 집안 질서다. 그러므로 종법이 내재된 유교 의례 혹은 상례의 실천은 儒者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일이자, 유교에서 지향하는 집안 중심의 사회 구조를 일상에서 몸소 구현하는 것이다.[2] 이를 위해 한 개인은 유교 의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신분에 맞는 의례 財用을 확보해야 한다.[3] 이에 사족 이상의 신분만이 유교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비사족은 지식 습득이나 재용 확보에 있어서 사족보다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고, 이것은 대체로 사족과 비사족의 유교 상례 설행 양상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 볼 수 있다.

사족의 유교 상례 연구는 지식 습득의 차원에서 禮學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고,[4] 최근에는 의례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사족의 상례 연구가 학문, 실천이라는 양 측면에서 성과

2) 이봉규,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실학 – 반계와 성호의 경우–」, 『哲學』 65, 2000, 6쪽.

3) 『家禮』, 「序」.

4)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 동전東傳 판본板本 문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6, 2010; 「朝鮮時代 『家禮』 硏究의 進展」, 『태동고전연구』 31, 2013; 정현정, 「조선(朝鮮)에서 「가례도(家禮圖)」이해의 흐름」, 『한국실학연구』 30, 2015; 이봉규, 「명청조와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시대 家禮 연구의 특색과 연구방향」, 『韓國思想史學』 44, 2013; 「이황의 『가례』 연구와 전승」, 『退溪學報』 147, 2020; 전성건, 「순암 안정복의 『가례』 연구와 그 방향」, 『한국실학연구』 39, 2020;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2021.

5) 김경숙, 「16세기 사대부가의 喪祭禮와 廬墓生活 – 이문건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7, 2001; 「17세기말 사대부가의 喪葬禮와 居喪生活– 尹爾厚의 『支菴日記』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172, 2016; 「18세기말 順菴 安鼎福家의 喪葬禮와 居喪生活」, 『古文書硏究』 50, 2017; 신진혜, 「임진왜란기 張顯

를 낸 상황에 반해 비사족의 상례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비사족 상례 연구는 그간 習俗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6] 비사족 상례의 정착 양상과 성격은 어떠한지 규명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비사족의 상례 설행은 왕실과 사족이 유교 의례를 조선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효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이다. 아울러 왕실 및 사족의 유교 상례 연구에서 추구한 조선의 유교화 과정에 다각화된 시각을 부여하여 입체적으로 유교 상례의 조선화와 조선 사회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비사족 관련 자료 가운데 하나인 閭巷書籍類[7]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가 다룰 여항서적류는 『秋齋紀異』, 『震彙續攷』, 『里鄕見聞錄』, 『熙朝軼事』[8] 로,

---

光(1554~1637)의 피난 중 喪·祭禮 시행양상」, 『韓國實學硏究』 40, 2020; 「임진왜란기 경상도지역 사족의 상, 제례 시행양상과 의미」, 『국학연구』 47, 2020.

6) 송재용, 「『眉巖日記』에 나타난 민속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15, 2007; 「『慵齋叢話』에 나타난 民俗 硏究」, 『東洋古典硏究』 38, 2010.

7) 여항서적류는 여항인에 의해 저술된 저서다. 여항인은 대체로 서울, 경기의 중인 이하 계층으로, 본고는 이와 비사족을 동일하게 보았다. 관련 연구는 이들의 시, 산문 등을 다루었고, 이것을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 아래 해석하였다. 하지만 여항서적에서 비사족의 상례 기록을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 대략적인 연구는 아래를 참조.윤재민, 「中人, 平民, 委巷의 槪念 限界 – '中人文學' 槪念의 設定을 위하여–」, 『어문논집』 27, 1987; 허경진, 「19세기에 엮어진 세 권의 평민전기집」, 『淵民 李家源 先生 七秩頌壽紀念論叢』, 정음사, 1987; 정옥자, 『朝鮮後期文化運動史』, 일조각, 1988; 정병호, 「〈里鄕見聞錄〉을 통해 본 朝鮮時代 閭巷人의 形象」, 『東方漢文學』 12, 1996;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8) 『추재기이』는 19세기경에 趙秀三(1762~1849)이, 『진휘속고』는 19세기경에 미상의 저자가, 『이향견문록』은 1862년(哲宗 13)에 劉在建(1793~1880)이, 『희조일사』는 1866년(高宗 3)에 李慶民(1814~1883)이 지은 책이다. 대체로 19세기에 저술되었으나 이전 시기의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는 2010년에 한겨레출판에서 간행한 『추재기이』, 2018년에 영남대학교출판부에서 간행한 『진휘속고』, 2008년에 문학동네에서 간행한 『이향견문록』, 2021년에 서해문집에서 간행한 『희조일사』의 해석을 참조하였다.

여기에는 비사족의 상례 관련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비사족 상례의 정착과 그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非士族 喪禮의 제정과 차등성

여기서 논할 유교 상례는 三年喪으로,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자신의 큰아들(嫡長子)이 죽었을 때 행하는 것이다. 삼년상의 절차는 시신의 이동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주가 죽은 사람을 전송하고(尊祖) 친족과 주변인은 상주를 공경하고(敬宗) 결집한다(收族).[9] 이처럼 죽은 사람의 전송과 적장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종법의 기능이 내재된 삼년상은 유교 상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유교 상례에는 보편성과 차등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보편성은 삼년상은 천자부터 서인까지의 모든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지내야 하는 천하의 공통된 상[10] 이라는 것에서 기인한다. 천자부터 서인까지 천하의 모든 사람이 삼년상을 지내는 까닭은 부모의 상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기 때문이다.[11] 다시 말해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신분에 구애받지 말

9) 『禮記正義』 卷34, 「大傳」,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禮記集說』 卷85, 「大傳」, "別子爲祖 繼別爲宗 … 又禮書曰 百夫無長 不散則亂 一族無宗 不離則疏 先王因族以立宗 敬宗以尊祖 故吉凶有以相及 有無得以相通 尊卑有分而不亂 親疏有別而不貳 貴賤有繫而不間 然後一宗如出乎一族 一族如出乎一家 一家如出乎一人 此禮俗所以刑 而人倫所以厚也"; 김진우, 「조선 후기 사회 기본 구조의 특징과 그 의의 – 家, 宗, 族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2, 2019b 참조.

10) 『禮記正義』 卷52, 「中庸」, "三年之喪 達乎天子 父母之喪 無貴賤一也"; 『禮記正義』 卷58, 「三年問」. "夫三年之喪 天下之達喪也【鄭注】達 謂自天子至於庶人".

11) 『禮記大全』 卷28, 三年問 "孔子曰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達喪也 …【注】父母之喪 無貴賤 故曰天下之達喪也".

고 자식된 도리로서 삼년상을 지내야 한다.

한편 차등성은 신분에 따른 차등으로, 상례를 포함한 예는 사 이상의 신분만이 행할 수 있다. 이것은 『禮記』「曲禮 上」의 '예는 아래로 서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절에서[12] 드러난다. 이를 두고 後漢代 鄭玄(127~200)은 서인은 예를 행하기에 바쁘므로 예에 걸맞은 기물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였고,[13] 明代 胡廣(1370~1418)도 서인은 비천한 신분이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들의 예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고, 옛날에 제정된 예는 모두 사에서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14] 더불어 그는 대부를 위해 형벌을 만들지 않은 것은 서인의 예를 만들지 않은 것과 같다면서[15] 서인을 예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16] 정현과 호광의 말에서 확인되듯 예는 사 이상의 신분만이 행할 수 있었고,[17] 이는 예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례[18]도 마찬가지였다.[19]

---

12) 『禮記正義』 卷3, 「曲禮 上」, "禮不下庶人".

13) 『禮記正義』 卷7, 「曲禮 上」, "禮不下庶人【鄭注】爲其遽於事 且不能備物"; 『家語』 卷7, 「五刑解30」, "凡所謂禮不下庶人者 以庶人遽其事而不能充禮 故不責之以備禮也".

14) 『禮記大全』 卷1, 「曲禮 上」, "禮不下庶人【注】庶人卑賤 且貧富不同 故經不言庶人之禮 古之制禮者 皆自士而始也"; 楊志剛, 『中國礼儀制度研究』, 華東師范大學出版社, 2001, 195~210쪽; 王美華, 『礼制下移与唐宋社會變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본론 2장; 劉永華, 『礼儀下鄉 – 明代以降閩西四保的礼儀變革与社會轉型 – 』,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9, 8~15쪽.

15) 『禮記大全』 卷1, 「曲禮 上」, "刑不上大夫【注】此云不上大夫者 言不制大夫之刑 猶不制庶人之禮也".

16) 김진우, 앞의 논문, 2019b, 35쪽.

17) Yonghua Liu, Confucian rituals and chinese villagers, Brill, 2013, p.5.

18) 『家禮會成』 卷1, 「文公家禮會成 序」, "冠昏喪祭 皆禮之大者 而喪爲尤大".

19) 천자는 7일 만에 殯을 마련하고 7개월 만에, 제후는 5일 만에 빈을 마련하고 5개월 만에, 대부, 사, 서인은 3일 만에 빈(殯)을 마련하고 3개월 만에 장례를 지내거나(『禮記正義』 卷12, 「王制」, "天子七日而殯 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大夫士庶人 三日而殯 三月而葬 三年之喪 自天子達"), 예는 사를 기준으로 만든

보편성과 차등성은 한 국가의 삼년상 도입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의 조정은 초기부터 사족과 비사족에게 『朱子家禮』[20] 에 따른 삼년상 실천을 권장하였다.[21] 이에 상례 실천 사례들을 포상하고 장려하거나,[22] 실천하지 않는 사례들을 처벌하고 본보기로 삼았다.[23] 成宗代 공식적으로 禮典과 法典이 편찬되기 전까지 조정은 대체로 보편성에 치중하여 유교 상례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예전인 『國朝五禮儀』(1473년)[24] 에서는 「大夫士庶人喪儀」[25]를 통해

것이므로 서인은 사의 예를 빌려서 시행하여(『禮記大全』 卷1, 「曲禮 上」, "禮不下庶人【注】古之制禮者 皆自士而始也 先儒云 其有事 則假士禮而行之") 서인의 상례에는 끈을 매달아 하관하고 봉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禮記正義』 卷12, 「王制」, "庶人縣封 葬不爲雨止 不封不樹 喪不貳事")이 그 예이다.

20) 이 책은 사(士)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서 사는 하인을 거느리고 예에 쓸 용도의 땅과 재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집안에서 일상생활에 공경을 위해 힘써야 할 때와 冠, 昏, 喪, 祭의 특수한 때에 『가례』를 참고하여 예를 행하였다(『家禮』, 「序」, "凡禮 有本有文 自其施於家者言之 則名分之守 愛敬之實 其本也 冠昏喪祭 儀章度數者 其文也 其本者有家日用之常體 固不可以一日而不修 其文又皆所以紀綱人道之始終 雖其行之有時 施之有所 然非講之素明 習之素熟 則其臨事之際 亦無以合宜而應節 是亦不可一日而不講且習焉者也"; Peter Kees Bol 著, 김영민 譯,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382쪽).

21) 『太宗實錄』 卷7, 太祖 4年 6月 28日 3번째 기사; 『世宗實錄』 卷51, 世宗 13年 3月 12日 1번째 기사; 『世宗實錄』 卷52, 世宗 13年 4月 6日 2번째 기사.

22)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12月 29日 2번째 기사;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 1月 24日 1번째 기사; 『世宗實錄』 卷3, 世宗 1年 2月 13日 2번째 기사; 『世宗實錄』 卷7, 世宗 2年 1月 21日 3번째 기사;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 11月 7日 4번째 기사; 『世宗實錄』 卷85, 世宗 21年 5月 22日 1번째 기사.조선시대 정표 정책과 그 정표 대상자들의 신분은 박주, 「朝鮮初期의 旌表者에 대한 一考察 – 孝子·烈女를 中心으로 –」, 『史學硏究』 37, 1983; 「16세기 旌表政策에 대한 硏究」, 『韓國傳統文化硏究』 5, 1989;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1997; 「朝鮮時代 孝子에 대한 旌表政策」, 『韓國思想史學』 10, 1998;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 국학자료원, 2000 참조.

23)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3月 19日 2번째 기사.

24) 관련 연구는 김문식,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藏書閣』 21, 2009; 장

왕실의 상례뿐 아니라 대부, 사, 서인의 상례도 수록하였다.[26] 법전인 『經國大典』(1484년)에서는 삼년상 실천을 권장한 사족과 달리 비사족에게는 3년 대신 100일 동안 상복을 입게 하였다.[27] 조선의 조정은 예전에서 왕실과 사서인의 상례를 나누고 법전에서 사와 서인의 상례를 구별하여 유교 상례의 차등성을 법제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유교 상례의 보편성과 차등성은 '中宗代 비사족 삼년상 논의'에서 상충하였다. 중종대는 燕山君代 사화로 인해 진전되지 못한 의례 관련 논의가 재개되는 시기다.[28] 중종대 발생한 비사족 삼년상 논의의 요지는 비사족인 서인의 삼년상 시행 여부였다. 전술한 『경국대전』「오복」에서 비사족은 부모의 삼년상에 상복을 100일 동안 입을 수 있었는데, 중종대에는 차등을 두는 측과 보편적으로 천하의 모든 신분이 삼년상을 하자는 측으로 나뉘게 되었다. 논의의 발단은 1508년(중종 3)에 生員인 任繼重(1481~1543)의 진언과 1513년(중종 8)에 朱允昌(1452~?)의 상소이다.

> 임금께서 직접 유생들에게 강을 받았다. 생원인 임계중이 대학을 강하여

동우,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2013 참조.

25) 『國朝五禮儀』 卷8, 「大夫士庶人喪儀」.
「대부사서인상의」의 절차를 『가례』에 수록된 유교 상례와 비교하면, 절차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세부 절차가 정식 절차로 바뀌었다. 대체로 『국조오례의』의 관련 절차는 큰 틀에서 『가례』를 차용하였지만 내용상으로는 『가례』를 이탈하기도 하였다(장동우, 위의 논문, 2013, 125~130쪽).

26) 이범직,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71, 1990;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45쪽; 장동우, 위의 논문, 2013, 133쪽.

27) 『經國大典』, 「五服」, "父 斬衰三年 軍士及庶人服百日 母同".

28)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硏究 – 性理學 正統論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83쪽.

마치고 아뢰었다. "① 孝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忠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 人道의 大綱입니다. … ② 삼년상은 천하에서 두루 행해지는 것이라 귀천 없이 같습니다. ③ 우리나라의 喪制는 서인은 단지 100일만 행할 수 있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단지 백일 동안만 슬픔을 알 뿐 3년 동안 부모 품 안에서 자란 의리는 모릅니다. 서민들이 모두 3년 동안 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한다면 孝悌의 풍속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고 백성들의 덕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갈 겁니다"[29]

위의 1508년(중종 3) 진언에서 임계중은 ① 효를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 짓고, 효를 실천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② 삼년상을 모든 신분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그는 부모가 3년 동안 자식을 품어주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의 상에 3년 동안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論語』「陽貨」의 구절[30]을 언급하면서 비사족들이 100일만 부모의 상을 실천하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고 보아 삼년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삼년상이 인간의 도리 중 가장 높은 것이니,[31] 비사족들에게 부모의 상을 3년 동안 치르게 하여 습속을 바로잡고 유교 사회에서 지향하는 사회를 조선에 정착시키려는 의도이다.

靑陽에 사는 副司正 朱允昌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였다. "① 삼년상

29) 『中宗實錄』 卷5, 中宗 3年 2月 1日 1번째 기사, "上親講儒生 生員任繼重講大學訖 仍進曰 孝者所以事親 而可以移忠 人道之大綱 … 三年之喪 天下之通行無貴賤一也 我朝喪制 庶人則只行百日 下愚之民 徒知百日之哀 而不知三年免懷之義 願令庶民 皆服三年 如是則孝悌之風 自然興行 而民德歸厚矣".

30) 『論語注疏』 卷17, 「陽貨」,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31) 『禮記正義』 卷58, 「三年問」, "故三年之喪 人道之至文者也 夫是之謂至隆【鄭注】言三年之喪 喪禮之最盛也".

은 천자부터 서인까지 귀천 없이 같습니다. 요즘 서인의 부모상은 백일에 미치질 못합니다. ②『經國大典』100일 동안 상복 입는 법을 개혁하여 다시 삼년상으로 세워주십시오"[32]

위의 1513년(중종 8) 주윤창의 상소도 임계중의 진언과 같다. 주윤창은 임계중처럼 ① 삼년상이 천자부터 서인까지 공통된 것임을 강조하고 당시 법전에서는 비사족이 부모의 상을 100일 동안만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② 법전을 고쳐 서인도 삼년상을 치르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두 상소는 비사족에게 삼년상 시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 주장의 근거는 '부모의 삼년상은 신분마다 공통된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에 예조는 반대하였고[33] 이전처럼『경국대전』에 따라 비사족은 100일 동안 부모의 상을 지내도록 결론 내렸다.[34]

이후 1516년(중종 11) 9월 21일 중종의 문제 제기[35]로 신하들은 이 사안에 둘로 나뉘었다. 비사족들의 삼년상을 찬성한 측은 李淸(1483~1549), 鄭膺(1490~1522), 成世昌(1481~1548), 반대한 측은 鄭光弼(1462~1538), 宋千喜(?~1520)이다. 찬성한 신하들은 대체로 중종의 의견에 동의하여 법전을 개정하자고 주장하여 비사족의 습속이 교화되길 바랐다.[36]

반대한 신하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정광필은 미천한 사람들

32)『中宗實錄』卷18, 中宗 8年 4月 14日 1번째 기사, "靑陽居副司正朱允昌上疏略曰 三年之喪 自天子以至於庶人 無貴賤一也 今之庶人 父母之喪 未及百日 請革大典服百日之法 復立三年之喪".

33) 고영진,「朝鮮 中期 禮說과 禮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32쪽.

34)『中宗實錄』卷18, 中宗 8年 4月 14日 1번째 기사.

35)『中宗實錄』卷26, 中宗 11年 9月 21日 1번째 기사, "御朝講 講禮記 至附於棺附於親 上曰 父母之喪 士大夫則皆行三年 而庶民則不然 此不可也 雖有欲行三年者 而使不得行 此尤非也".

36)『中宗實錄』卷26, 中宗 11年 9月 21日 1번째 기사.

과 삼년상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였고,[37] 송천희는 비사족이 100일상을 하는 것은 祖宗의 법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38] 이 논의는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9월 26일로 미루어졌다.

9월 26일에 삼년상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이 사안이 조종의 법이라 고칠 수 없다고 하거나, 비사족들이 삼년상을 핑계로 役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9] 중종은 여전히 법전의 개정을 고수하며 이 논의를 연기하였다. 11월 6일 중종은 삼년상이 상하 존비에 다름이 없음을 강조하고 비사족의 삼년상을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습속이 바로 잡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0]

같은 날, 삼년상에 찬성하는 申用漑(1463~1519), 金詮(1458~1523)은 중종의 의견에 동의하여 비사족들이 삼년상을 통해 역을 피하려는 폐단보다 신분마다 삼년상에 차등을 두어 발생하는 불평등의 폐단이 더 무거우므로 삼년상을 신분마다 두루 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고 하였다.

반대하는 정광필, 朴說(1464~1517), 金應箕(1455~1519), 李繼孟(1458~1523), 송천희는 삼년상을 핑계로 역을 피함을 주된 이유로 들어 사족들이 먼저 삼년상을 착실하게 행하면 비사족들도 이를 보고 동화되어 사족들을 따라 할 것이니, 비사족들이 삼년상을 하게 하지 말고 旌閭門을 세워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자고 하였다.[41]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11월 11일에 논의가 급하게 마무리

37)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9月 21日 1번째 기사, "領事鄭光弼曰 賤隷之人勢所不得爲".
38)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9月 21日 1번째 기사, "千喜曰 庶人之行百日喪者乃祖宗朝之法 當察而處之".
39)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9月 26日 4번째 기사.
40)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11月 6日 5번째 기사; 이석규, 「조선 전기 三年喪制의 확립과 民의 성장」, 『한국사연구』 161, 2013, 114~115쪽.
41)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11月 6日 6번째 기사.

된다. 중종은 전교를 내려 비사족의 삼년상에 대한 신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법전을 개정하지 않고 비사족 가운데 삼년상을 치르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락하라고 지시하였다.[42)]

중종대 비사족의 삼년상 논의에서 삼년상을 찬성하는 중종과 신하들은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이들은 삼년상이 천하의 모든 신분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지내야 하는 유교 상례의 전형으로 본다. 둘째, 이를 통해 유교가 지향하는 사회 구조를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고 습속을 바로 잡아 왕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한다. 찬성 측 입장은 대체로 유교 상례의 보편성을 근거로, 유교 사회의 기본 구조를 도입하여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대하는 신하들도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이들은 비사족들에게 삼년상을 허용하면 부모의 상을 치르고 있다는 핑계로 역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존비의 차이가 있는 비사족과 사족이 같이 삼년상을 치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대 측 입장은 유교 상례의 차등성을 근거로, 사족과 비사족 간 신분 경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유교의 이념에 의해 비사족들의 상례가 변형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자, 왕실부터 사족, 서인까지 예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43)] 하지만 이는 1518년(중종 13)의 金淨(1486~1521)과 崔淑生(1457~1520)의 주장과 이 사안이 급하게 마무리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중종대 논의는 비사족의 삼년상을 허용하여 국왕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관점[44)]과 신분제를 강조하여 사족과 비사족이 삼년상을 같이 실천할 수 없

42) 『中宗實錄』 卷26, 中宗 11年 11月 11日 2번째 기사.
43)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硏究 – 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1991, 400쪽.
44) 『中宗實錄』 卷31, 中宗 13年 1月 14日 2번째 기사, "參贊官金淨曰 … 孝親雖若私事 忠臣皆由於此 則乃人倫之至也".

다는 관점[45] 의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나아가 이는 조선 초기 유교 상례의 정착 과정에서 그것의 보편성과 차등성이 상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논의의 과정에서 보이는 비사족과의 차등을 강조하는 사족으로 인해 이후 비사족은 사족처럼 온전하게 유교 상례를 치를 수 없게 되었다.[46]

Ⅲ. 非士族의 차등적 喪禮 실천과 원인

조선 후기는 유교 의례의 조선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는 사족 주도 아래 유교 의례를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학문적(禮學), 실생활적(의례 실천) 영역에서 나타났다. 이에 사족뿐 아니라 비사족의 상례 실천 사례에서도 유교 의례를 잘 이해하여 실천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였다. 아래 표[47] 는 이렇게 유교 의례의 조선화 과정과 비사족의 상례 실천 사례를 연관 지어 시기별, 성격별로 분류한 것이다.

45) 『中宗實錄』 卷31, 中宗 13年 1月 14日 2번째 기사, "崔淑生曰 … 自古以來 士大夫庶人異制 今亦不可一例聽之也".

46) 『中宗實錄』 卷44, 中宗 17年 4月 12日 1번째 기사.
위 기사는 李賢輔(1467~1555) 등이 사족과 비사족의 사치스러운 服喪 습속을 지적하면서 사족과 비사족의 상례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중종대 비사족 상례 논의의 결론이 비사족에게 삼년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귀결되었지만, 사족은 여전히 차등성을 기반으로 신분제를 강조하였다.

47) 이는 본고에서 다룬 4권의 여항서적에서 발췌한 비사족의 상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표 1〉 비사족 상례 사례의 분류

	15세기	16-17세기	18-19세기	시기 미상	총 계
知禮	-	-	3	-	3
至誠	3	6	6	7	22
知禮+至誠	-	3	11	-	14
희생	-	1	7	1	9
총 계	3	10	27	8	48

관련 사례들은 총 48건(중복 사례 포함)[48] 으로, 『추재기이』는 4건, 『진휘속고』는 8건, 『이향견문록』은 22건, 『희조일사』는 14건이다. 시기는 유교 의례의 정착에 근거하여 대별하였다. 사례는 성격에 따라 상례를 잘 아는 사람(知禮), 상례를 지극정성으로 지내는 사람(至誠), 상례를 잘 알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知禮+至誠), 상례를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희생)으로 나누었다.

첫째, 상례를 잘 아는 사람(지례)은 18세기 이후에 등장한다. 金昌九은 살아 있는 부모를 봉양하고 죽은 부모를 전송하는 일을 예의 뜻에 따라서 英祖가 역을 면제해주었다.[49] 崔院長은 平安道 정주(定原)의 사람이다. 그는 程朱學 가운데서도 예학을 좋아해서 白慶翰(?~1812)과 韓浩運(1761~1812) 등의 사족 자제들을 가르쳤다.[50]

둘째, 상례를 지극정성으로 지내는 사람(지성)은 15세기에 3건, 16~17세기에 6건, 18~19세기에 6건, 시기 미상에 7건이 있다. 대체로 비사족이

48) 중복 사례는 劉希慶, 朴泰星, 白胤耆, 安光洙, 韓以亨, 宋奎輝, 金重鎭, 金益春, 廋世通으로 총 9건이다.

49) 『震彙續攷』, 「金昌九」, "幼有至性 … 其他養生送死 遵禮意 事聞英廟 癸未命守臣 親書海東黔婁金昌九之閭九字 鐫揭其門 終身復戶".

50) 『秋齋集』 卷7, 「詩 紀異 崔院長」, "院長名不知 定原新安書院院長也 少喜讀書 潛心於程朱之學 尤喜禮學 敎授邑子弟 贈參判白公慶翰 , 贈參判韓公浩運皆其人".

지극정성으로 상례를 지내면 여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맹수가 나타나거나 지형이 바뀐다.[51]

宣祖代 鄭玉良, 吳千松(?~1639), 李擢英(1541~1610), 鄭潤, 白士良,[52] 朴志順,[53] 鄭敏僑, 張混(1759~1828), 鄭民秀, 朴允默 등에서도 여묘 생활과 유교 상례를 실천하려는 노력, 상주의 효성에 감동하여 대추나무가 자라나는[54] 등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다. 아울러 상주의 거상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 16~19세기 사례에서 상주는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하면서 곡을 하고 초하루(朔日)와 보름(望日)이 되면 묘를 살피고 음식을 올렸다.[55] 여묘를 하는 동안에는 거친 밥을 먹고 거적에서 자며 흙덩이를 베개로 베고 絰과 帶를 벗지 않았다.[56] 심지어 아침저녁으로 지나치게 곡을 하여 거적이 썩기까지 하였다.[57] 타지에서 죽은 경우, 자식이 죽은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와서 장례를 지내는 返葬을 실천하기도 하였다.[58] 이상의 내용은 『禮記』,[59] 『朱子家禮』,[60] 『家禮儀節』[61]

51) 『震彙續攷』, 「孝子 吳浚」.
52) 『里鄕見聞錄』 卷2, 「白孝子士良」, "白士良 全州府內人也 英廟十三年丁亥春 全州火 … 及母死 終三年守墓 其子病 家人要之不至 子死亦不至 一府人 咸以至孝稱之 … 樊巖集".
53) 『秋齋集』 卷7, 「詩 紀異 朴孝子」, "孝子名志順 統營將校也 … 喪而廬墓有虎來護".
54) 『震彙續攷』, 「孝子 鄭玉良」, "宣廟朝人 三嘉陸洞 士人也 … 母歿葬祭以禮 守廬三年 仍於家廟前 朝夕上食 又追生時棗茶之嗜 用奠不怠 一日於冬月 茶盡未進 向廟號泣 朝起而視之 白棗七枚 忽生廟傍 數尺其長 結子滿枝 里報官家 圖上白棗 轉聞于朝 表旌孝閭".
55) 『熙朝軼事』 卷下, 「張混」; 『熙朝軼事』 卷下, 「鄭民秀」; 『熙朝軼事』 卷下, 「朴允默」; 『里鄕見聞錄』 卷2, 「權孝子載中」.
56) 『里鄕見聞錄』 卷2, 「吳孝子千松」; 『熙朝軼事』 卷上, 「鄭潤」; 『熙朝軼事』 卷下, 「張混」"; 『熙朝軼事』 卷上, 「鄭來僑」; 『里鄕見聞錄』 卷2, 「金孝子遠鳴」; 『震彙續攷』, 「朴泰星」; 『熙朝軼事』 卷上, 「朴泰星」.
57) 『里鄕見聞錄』 卷2, 「吳判尹寅植」; 『里鄕見聞錄』 卷2, 「尹敎官民性」.
58) 『里鄕見聞錄』 卷2, 「李孝子擢英」.

에서 확인된다.

셋째, 상례를 잘 알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지례+지성)은 16~17세기에 3건, 18~19세기에 11건이다.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16~17세기에 1건, 18~19세기에 4건이다.

劉希慶은 여항인이다. 아버지는 業同이고 할아버지는 通政이다. 본관은 江華이고 자는 應吉이며 호는 村隱 혹은 市隱이다. 仁祖 乙巳年(1545년)에 태어나 嘉義大夫가 되어 92세에 죽었고 判尹에 추증되었다. 어려서는 성품이 훌륭하였는데, ① 30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흙을 날라서 장례를 지냈고 (묘를) 지키려고 떠나질 않았다. 이웃인 승려가 그를 불쌍하게 여겨 흙집을 묘 근처에 지어주고 직접 죽을 끓여 먹기를 권하였다. … ② 어릴 때 唐詩를 思庵 朴淳에게 배우고 東岡 南彦經에게 『朱子家禮』를 수학하였다. 예에 해박하였지만, 상례에 더욱 밝아 公卿大夫에게 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를 만났고 祭服匠이라고 하였다. 나라에서 상이 있을 때 質殺 사용에 대하여 의논하였는데, 그 제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유희경을 불러 정하였다. … 동강 남언경에게 예설을 수학하였고 『三禮注疏』, 『通典』, 『家禮儀節』에 해박하였다. … ③ 국가의 상(國恤)부터 사족의 상까지 유희경을 모시고 飯含과 斂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 그가 두루 찾아가지 못하면 麻를 보내 상복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침류대 아래에 서로 이어져 있어 유희경이 모두 응대하였다. … ④ 문집 두 권과 『喪禮抄』 한 권이 있다.[62]

59) 『禮記正義』 卷57, 「間傳」, "父母之喪 旣虞 卒哭 疏食水飮"; 『禮記正義』 卷57, 「間傳」, "父母之喪 居倚廬 寢苫枕塊 不說絰帶".

60) 『家禮』 卷4, 「喪禮 朝夕哭奠」, "朔日則於朝奠設饌 … 高氏曰 若遇朔望節序 則具盛饌 其品物 比朝夕奠差衆".

61) 『家禮儀節』 卷6, 「喪禮 返葬儀」.

62) 『震彙續攷』, 「孝子 劉希慶」, "閭巷人也 父業同 祖通政 貫江華 字應吉 號村隱 又市隱 仁宗乙巳生 壽嘉義九十二 贈判尹 幼有至性 年三十父沒 負土以葬 因

위를 살펴보면, ① 劉希慶(1545~1636)이 30세일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는 흙을 직접 날라서 장례를 지내고 여묘 생활을 하였다. ② 어릴 때 東岡 南彦經(1528~1594)에게 『가례』, 『삼례주소』, 『통전』, 『가례의절』을 수학하여 여러 예설을 통달하고 ④ 『상례초』를 저술하였다. ③ 그의 예에 대한 조예 때문에 국가의 상, 사족의 상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유희경을 모시고 자신들의 상례를 치르려고 하거나 麻를 보내 상복을 만들고자 하였다.

유희경처럼 安光洙(1710~1765)는 『가례』에 정통하여 성균관 인근 泮村의 습속을 교화하고자 冠婚喪祭의 四禮 관련 도식을 그려 백성들이 程朱가 세운 규범을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 안광수 본인도 예를 실천하여 부모의 상에 3년 동안 거친 밥을 먹고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였다.[63] 습속의 禮敎化와 자신이 직접 예를 실천하는 모습은 안광수뿐 아니라 韓以亨(1742~1789), 白胤耆(1710~1758), 庾世通[64] 에게도 보인다. 이들은 유교

守不去 有隣僧哀之 作土宇其側 手煮粥勸之食 … 少學唐詩於朴思庵 又從南東岡 受朱子家禮 博綜之禮 尤明於喪禮 公卿大夫有喪 必邀之 稱以祭服匠 國有喪議用質殺 無能知其制者 乃召希慶定之 … 受禮說於東崗南公 遂博綜三禮注疏及杜典丘儀 … 自國恤以至士喪 莫不待君而含斂 其未遍詣 則送麻裁服者 相接於枕流臺下 君一皆順應 … 有集二卷 喪禮抄一卷"; 『里鄕見聞錄』 卷1, 「劉村隱希慶」; 『熙朝軼事』 卷上, 「劉希慶」.

63) 『里鄕見聞錄』 卷1, 「安竹軒光洙」, "安光洙 字聖魯 自號竹軒 順興人 … 自其先流入國學之泮村 … 泮村之俗 剛者博奕任俠 嗇者又逐逐於末利 鮮能率禮敎 … 冠婚喪祭手自圖式 令民易曉 使毋越程朱之儀則 … 然光洙不徒以言爲敎而已 亦能反諸身而立之本 居喪疎食三年 晨昏哭泣 雖甚病不廢 … 保晩齋集"; 『熙朝軼事』 卷上, 「安光洙」, "安光洙字聖魯 自號竹軒 自其先流入國學之泮村寄居焉 泮村之俗 剛者博奕任俠 嗇者又逐逐於末利 鮮能率禮敎 … 冠昏喪祭手自圖式 令民易曉 使毋越程朱之儀則 … 然光洙不徒以言爲敎而已 亦能反諸身而立之本 居喪疏食三年 晨昏哭泣 雖甚病不廢 … 保晩齋集".

64) 유세통은 洪鳳漢(1713~1778)과의 일화 때문에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壺山外史』, 「庾世通傳」, "世通掌關西時 通文館入燕 原包外有加包之論狀於首揆洪相國鳳漢 相國使世通判許 世通不從曰 此重典不可遽許 相國笑謂

상례를 공부하여 이전의 사례들과 같은 양상으로 부모의 상을 치렀다. 나아가 아전들이 상을 당하였을 때 집안에서는 상복, 집 밖에서는 평상복을 입는 습속을 白笠과 黑團領 착용으로 바꾸거나,[65] 예학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을 논변하기도 하였다.[66] 심지어 英祖代 편찬된 『國朝喪禮補編』에 많은 의견이 채용되었다.[67]

넷째, 상례를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희생)은 대개 비사족 가운데 상례를 치르다가 몸이 상하여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해당 사례는 16~17세기에 1건, 18~19세기에 7건, 시기 미상에 1건이 있다.

> 工曹參議로 추증된 安泰新은 … 부친상을 당하자 슬퍼서 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안태신은) 입으로 물도 마시지 못하

諸譯曰 何不先見掌吏 諸譯往見世通 細述加包不可已之狀 世通曰 果如是 吾將謝相國而許之").『호산외사』는 趙熙龍(1789~1866)이 편찬한 것으로, 본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奎6755)를 참조하였다.

65) 『里鄕見聞錄』 卷3, 「廋籌司世通」, "廋世通字公元 漢譯人也 事親孝 父歿 廬墓三年 哀毁過節 … 有古長者風 窮族貧交之不能婚葬者 必經紀之 … 迄今行之胥吏之居憂者 在家挂麻 出則衣常服 人無以辨之 世通母歿 悲其服華 告之廟堂 白笠而外黑團領而壞色 自世通始也 … 壺山外記"; 『熙朝軼事』 卷下, 「庾世通」.

66) 『里鄕見聞錄』 卷1, 「韓栗村以亨」, "韓以亨 以英廟壬戌十月十七日生 幼而穎悟 儼若成人 五歲而孤 因失學 追逐無賴 … 尤精於禮學 疑晦講辨甚多 … 其居憂也 倚廬疏食 盡其禮 春秋時祀 深衣大帶 致其嚴 … 晩翠亭稿"; 『熙朝軼事』 卷上, 「韓以亨」.

67) 『震彙續攷』, 「白胤耆」, "平山人 高麗侍中景臣後 字頤孟 号學古堂 堂受學于朴澹翁 … 竭力事親 友愛兄弟 奉先致誠敬 三月一上墓 輒哭盡哀 斥巫卜絶 嗜欲嚴於辭受 英廟戊寅 纂喪禮補編 以胤耆知禮辟之 令給事左右而佐之 胤耆論三大禮 請白于上曰 昭穆之制也 被髮之謬也 嗣王冕服之疑也 諸臣重其事 不能用 又議節目數十條 多見採用 人或譏其爲吏者 卽曰 此古人所謂祿養 且隨事得自效報國 豈有貴賤乎 補編未訖而沒 年四十九 宗伯申晦 亞銓金致仁 白上言 白胤耆持母喪 鹽菜之外 無所食 每日仕退 服衰居苫 哭泣之哀 感動傍人 且精通疑禮 今纂喪禮 多採其言 上嗟異之 命旌閭"; 『熙朝軼事』 卷上, 「白胤耆」.

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퍼하길 예보다 지나쳤다. 장례를 치른 후 애통하고 휑한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2년 동안 여묘 생활을 하고 밤낮으로 곡을 하였다. 결국 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68]

위의 17세기 중후반대 인물 安泰新[69] 은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장례를 치르고 2년 동안 여묘 생활을 하는 중에 죽었다. 이는 18세기에서도 있다.

金重鎭은 여항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학만이다. … 12살에 어머니가 염병에 걸렸다. … ① 상을 치를 때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곡을 하였고 물 한 잔도 입에 넣지 않았다. 예를 준수하여 상례를 치러 마치 성인 같았다. ② 장례를 지내고 그의 아버지에게 "제가 평소 어머니를 잠시라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차마 어머니의 시신을 버리고 돌아 오지 못할 것 같아 3년 동안 여묘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을 위로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매우 괴이하여 들어주질 않았다. 이때부터 김중진의 슬픔이 더욱 심해져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니 오직 아침저녁으로 상식하며 곡할 때만 제외하고 그 애통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기를 권해도 결코 먹으려 하지 않고 매번 여묘 일을 때때로 울며 간청하였다. 아버지가 측은해하면서 "내 평생을 돌아보면 오직 너 한 명뿐인데 너가 만약 여묘 생활을 하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겠느냐? 게다가 12살 된 아이가 여묘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예인지 들어

68) 『里鄕見聞錄』 卷2, 「安工參泰新」, "安工參泰新 … 及丁親喪毁瘁 不勝喪以卒 … 及其易簀 水漿不入口 擗踊踰禮 窆厝之後 不忍哀廓之痛 廬墓二年 晝夜號哭 終至不勝喪而沒 … 兼山筆記".

69) 유재건의 역서를 참조하면 그의 증손 安曾得이 1773년(영조 49)에 律科에 합격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안태신의 생몰년은 17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유재건 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이향견문록 – 이조시대 탁월한 서민들 이야기 –』, 2008, 97쪽).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김중진은 "여묘 생활은 불과 3년이지만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그날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村隱 劉希慶도 13세에 아버지의 묘에서 여묘 생활을 하며 어린 마음에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어째서 어리다고 지극한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계속해서 간청하였다. ③ 아버지가 부득이하게 허락하였다. 이에 묘 아래에 살면서 날마다 3번 곡을 하고 묘역을 쓸면서 살펴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반년 동안 이처럼 하니 발병하여 날이 갈수록 매우 위중하였다. 아버지가 (김중진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④ 죽을 때가 되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 죽으면 아버지에게 저지른 불효가 큽니다. 다만 어머니만 안 좋은 땅에 묻혀 해를 넘겼으니 이것이 정말 아픕니다. 서둘러 좋은 땅에 묻어 제가 황천에서 한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고 죽으니 나이는 겨우 13살이었고,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70]

위의 金重鎭(1720~1731)은 염병에 걸린 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을 치르면서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한다는 『예기』「喪服四制」의 구절[71]대로 곡을 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② 어머니의

70) 『里鄕見聞錄』 卷2, 「金童子重鎭」, "金童重鎭 閭巷子 其父曰學萬 … 十二歲 母遘癘 … 及喪 哭不絶聲 水勺不入口 執喪遵禮 一如成人 旣葬 告其父曰 兒平日未嘗須臾離母 今不忍舍其體魄而歸 願居墓三年 以慰亡母之魂 父大怪之不聽 自是重鎭哀毁尤深 父嚴加誚責 則惟上食朝夕哭臨外 不得現其悲哀之色 勸以肉汁 抵死不肯 每以廬墓事 時時泣懇 父惻然曰 顧吾平生 惟汝一塊 汝若廬墓 我誰與處 且十二歲兒廬墓 未聞是禮也 重鎭曰 侍廬不過三年 奉養 則其日無窮 昔劉村隱十三歲 廬父墓 兒心常慕之 豈可以幼冲而廢至情乎 懇之不已 父不得已許之 乃居墓下 日三哭臨 省掃不怠 如是半載 病發日深重 父舁還家 醫治無效 臨終泣告父曰 兒今死矣 不孝于爺 大矣 但母淺土閱歲 此尤深痛 願亟永窆吉地 毋令兒抱恨泉下 言訖死 年纔十三 行路聞之 莫不流涕 … 省齋集"; 『熙朝軼事』 卷上, 「金重鎭」.

장례를 지내고 김중진은 아버지에게 3년 동안 여묘 생활을 하고 싶다 하여 ③ 아버지의 허락하에 여묘 생활을 하며 묘를 살폈지만 병을 얻게 되어 죽게 되었다. ④ 그는 죽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이장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어머니의 상례에 지극정성이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상례를 실천하는 김중진의 모습은 앞서 안태신과 다른 사례들과 대동소이하다.[72] 이들은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지나치게 슬퍼하여 3년 동안의 상례 실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첫째(지례)와 셋째(지례+지성) 유형은 15세기에는 관련 사례들이 전무하고 16세기 이후부터 사례들이 등장한다. 사례들에서 비사족은 유교 상례에 정통하여 잘 실천하는 인물로, 이들의 의견이 왕실과 사족의 상례에 차용되었다. 둘째(지성) 유형은 15세기에는 상주의 효성에 감동하여 맹수가 나타나 그들을 지켜주거나, 상주를 돕기 위해 주변 지형이 바뀐다. 이후 시기에는 15세기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되 비사족의 상례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넷째(희생) 유형은 모두 상주가 부모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

네 유형으로 분류한 사례들은 조선 후기 유교 상례의 조선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사족은 중종대 삼년상이 허용되어도 이후 시기에 여전히 차등적으로 상례를 실천하였다. 심지어 유교 상례 규정에 어긋나기도 하여 여묘 생활과 몇몇 절차만 기록되거나 거상 중 상주가 죽기도 하였다. 특히 상주의 죽음을 효와 예교(禮敎)라 한 것[73]은 병을 얻

71) 『禮記正義』 卷63, 「喪服四制」, "始死 三日不怠".

72) 『里鄕見聞錄』 卷2, 「金孝子益春」; 『熙朝軼事』 卷上, 「金益春」; 『里鄕見聞錄』 卷2, 「宋恥翁奎輝」; 『熙朝軼事』 卷上, 「宋奎輝」; 『里鄕見聞錄』 卷2, 「朴同樞受天」; 『里鄕見聞錄』 卷2, 「尹敎官民性」.

73) 『里鄕見聞錄』 卷2, 「宋恥翁奎輝」, "昔孔子答樊遲問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禮之失久矣 今之士大夫 居喪 惟仕宦宴饗女樂不爲 自以爲孝 而能盡其生葬祀之禮者 幾希矣 若生者 可謂知禮矣 夫揄揚篤行之人 所以敦世

어 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불효로 간주하여[74] 죽은 사람 모시는 것을 살아 계실 때 모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지극한 효[75] 임을 강조하는 예의 원칙에 모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조선시대 비사족의 상례 실천 사례는 상례를 잘 알고 잘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는 예가 비사족 사회로 하향화되어 확산되는(禮下庶人) 현상으로, 사족 사회에서 예가 정착되는 상황과 함께 상례가 조선화되어 유교에서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는 朴趾源(1737~1805)과 청나라 武人인 郝成(?~?)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76]

② 아울러 이는 이들의 사족 문화 지향, 구체적으로 사족이 실천하는 유교 문화 지향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비사족이 유교 의례, 종법 등의 사족 문화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따라 하고자 한다.[77] 이는 혼례와 상례의 사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혼례나 상례를 치를 때 비사족이 사족의 의례를 따르고자 한다는 1804년(純祖 4) 우의정 李敬一(1734~1820)이 발언에서도 확인된다.[78]

敎厚民風 而使後世知有本也 孝生所爲 於法宜旌孝".

74) 『禮記大全』 卷1, 「曲禮 上」, "居喪之禮 頭有創則沐 身有瘍則浴 有疾則飮酒食肉 疾止復初 不勝喪 乃比於不慈不孝【注】… 朱子曰 下不足以傳後 故比於不慈 上不足以奉先 故比於不孝".

75) 『禮記正義』 卷52, 「中庸」,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76) 『燕巖集』 卷13, 「別集【潘南朴趾源美齋 著】熱河日記 黃敎問答」, "志亭曰 貴國寢墓之制何如 余曰 雖倣古禮 國俗尙儉 不殉寶玉 自公卿貴人下至匹庶 喪葬之制 皆用文公家禮".두 사람의 대화에서 박지원은 사족과 비사족이 상례에 『가례』를 썼다고 한다. 이는 사족과 비사족에게 유교 상례 준수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유교 상례가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77) 정옥자, 앞의 책, 2003; 권기석, 「『里鄕見聞錄』 수록 인물의 사회계층적 위상과 신분 관념」, 『朝鮮時代史學報』 72, 2015 참조.

78) 『承政院日記』 1884책, 純祖 4年 9月 15日, "甲子九月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 婚娶之需 喪葬之資 閭巷庶民 皆效卿大夫之禮".

그러나 위의 예의 하향화와 비사족의 사족 문화 지향에도 여전히 비사족이 거상 중 죽거나 일부 절차만 시행하여 차등적으로 상례를 실천하는 원인은 ③ 중종대부터 지속된 사족의 비사족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 『禮記』「曲禮」에서 형벌은 위로 대부에게 미치지 못하고 예는 아래로 서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위와 아래라는 두 글자가 매우 좋다. 예가 아래로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서인이 천하기 때문에 예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79]

위 李睟光(1563~1628)의 발언은 사족과 비사족을 구분지어 예의 차등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수광은 서인이 일하는 데 급급하여 예를 차릴 여유가 없다는 정현, 호광과 다르게 서인이 천하기 때문에 예를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신분제적인 관점에서 비사족의 천한 신분을 근거로 들어 사족의 예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 ① 옛날에 예는 아래로 서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재물이) 부족한데 대부와 사를 사모하여 본받으려 한다면 (서인에게) 해가 되므로 성인이 반드시 금지하고자 한 것이다. ② 지금 나라의 풍속에서는 간혹 한 때 부유하다고 하여 반드시 경대부와 같아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방탕해져서 (경대부 급에) 이르길 바라니, 이치에 어긋나고 습속에 어그러짐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80]

---

79) 『芝峯類說』 卷5, 「經書部一 禮記」, "曲禮曰刑不上大夫 禮不下庶人 其上下二字甚好 所謂禮不下者 以庶人賤 故不得備禮也".

80) 『星湖全集』 卷26, 「書 與安百順 戊寅」, "古者禮不下庶人 爲財不足也 … 不足而慕效大夫士則有害 聖人必禁抑也 今國風或一時富有 必與卿大夫埒 故貧者

위의 1758년(영조 34)에 李瀷(1681~1763)이 安鼎福(1712~1791)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다. ① 옛날에는 서인이 재물이 부족하여 예를 갖추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익은 이 말이 생긴 까닭이 재물이 부족한 비사족이 윗 계급의 예를 본받으려 한다면 해가 되기 때문이라 보았다. ②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비사족이 사족의 예를 따라 하여 사족과 동일 선상에 있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익은 이를 이치에 어긋나는 어그러진 습속이라 지적하였다. 비사족과 사족이 같은 예를 실천하는 일을 사족은 비사족과 자신들이 동일 선상에 놓이는 일이자, 이치와 습속에 어긋나는 일이라 여긴 것이다. 이에 비사족보다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족은 유교 의례를 사족만이 실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81] 비사족이 여묘 생활하거나 허벅지를 자르는 행위가 유교 의례에 어긋나도 이 사례를 습속 교화와 효라고 칭하며 장려하였다.[82]

조선시대 비사족의 상례 실천은 예의 하향화와 이들의 사족 문화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비사족의 상례는 비사족이 신분적 한계를 허물지 못한 상황[83] 과 사족이 비사족이 유교 상례를 온전하게 치르는 것을 신분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라 여겨 지양하는 경향과 맞물려 여전히 사족의 상례 설행에 비해 불완전하고 차등적이었다.

이점은 결국 조선 사회에서 유교 상례가 비사족에게 하향화되어 사족과 비사족이 유교 의례를 실천하는 것(禮下庶人)이 아닌, 비사족과 사족의 인식 때문에 예는 아래로 서인에게 미치지 못한다(禮不下庶人)라는 예의 차등성이 고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蕩散而企及 違理敗俗 莫此甚也".

81) 『擇里志』, 「四民總論」, "天下之至美好者 士大夫之名也 然其所以不失士大夫之名者 以其守古聖人之法也 毋論其爲士爲農爲工賈 當一修士大夫之行 而此非禮不能".

82) 『東國輿地志』 卷首, 「修正東國輿地志凡例」.

83) 권기석, 앞의 논문, 2015, 313쪽.

Ⅳ. 맺음말

본고는 조선시대 비사족 상례의 정착 양상과 그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제와 실제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유교 상례에는 보편성과 차등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편성은 천자부터 서인까지의 모든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지내야 함을, 차등성은 유교 상례를 지낼 때는 신분 차등이 있어서 사 이상의 신분만이 유교 상례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

보편성과 차등성은 조선의 유교 상례 도입에서도 보인다. 조선 초기 조정은 보편성에 따라 사족과 비사족 모두에게 유교 상례 실천을 장려하였다. 이후 성종대 예전과 법전 편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등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편성과 차등성은 신분제로 인해 상충하기 마련인데, 이는 중종대 비사족 삼년상 논의에서 나타났다.

이 논의를 요약하면 비사족의 삼년상 실천을 찬성하는 중종과 신하들은 대체로 유교 상례의 보편성을 근거로, 유교에서 지향하는 사회 기본 구조를 도입하여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유교 상례의 차등성을 근거로, 사족과 비사족의 신분 질서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는 비사족의 삼년상을 허용하여 국왕 중심의 질서를 정립하려는 측과 신분제를 강조하여 사족과 비사족이 삼년상을 같이 실천할 수 없다는 측의 견해차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 비사족 가운데 삼년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년상을 치르게 하자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지만, 사족의 인식을 고려하면 차등성이 고수되었다.

이후에도 비사족은 유교 상례를 차등적으로 행하였다. 이는 네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지례)와 셋째(지례+지성) 유형은 16세기 이후부터 사례들이 등장한다. 사례들에서 유교 상례에 정통한 비사족이 등장하여 이

들의 의견이 왕실과 사족의 상례에 차용되었다고 한다. 둘째(지성) 유형은 상주의 효성에 감동하여 신묘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15세기 이후 사례에는 비사족의 상례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넷째(희생) 유형에서는 모두 상주가 부모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

사례들은 조선시대 비사족의 상례 실천은 예의 하향화와 이들의 사족 문화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상례가 사족에 비하면 불완전하고 차등적인 까닭은 비사족이 신분적 한계를 허물지 못한 상황과 사족이 비사족이 유교 상례를 온전하게 치르는 것을 신분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라 여겨 지양하는 경향 때문이다. 결국 조선 사회에서 유교 상례가 비사족에게 하향화되어 사족과 비사족이 유교 의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는 아래로 서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예의 차등성이 고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3.02.27. 투고 / 2023.03.27. 심사완료 / 2023.03.31. 게재확정)

[Abstract]

The settlement and characteristic of common people's mourning ritual in the Joseon dynasty

Kim, Jin-Woo

This paper reviewed the laws and actual cases related to common people's mourning ritual to analyzes the settlement and characteristic of common people's mourning ritual during the Joseon dynasty. What this paper talking about this paper is common people's confucian mourning ritual and three-year mourning ritual. Confucian mourning ritual has universality and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Confucian mourning ritual, the two characteristics conflict. In Joseon dynasty, there was the three-year mourning ritual discussion of common people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In the discussion, those in agreement tried to establish a king-centered order by common people's mourning ritual and those in opposition emphasized the status system. Since then, common people have practiced confucian mourning rituals difference. There are four types. Four types are important in terms of the spreading of confucian mourning ritual. However, their mourning rituals are still incomplete compared to the gentry. The reason is that the gentry tends to maintaining their status. In the end, Confucian mourning rituals were spreaded to the people in Joseon, but it can be said that the difference was adhered to that the gentry and common people did not practice

Confucian mourning ritual equally.

□ Keyword

Common people, Confucian, Mourning ritual, Three-year mourning ritual, Difference

[참고문헌]

사료

『經國大典』(국립중앙도서관).

孔穎達, 『禮記正義』(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00).

邱濬, 『家禮儀節』(대전 : 學民文化社, 2007).

『國朝五禮儀』(서울 : 학자원, 2017).

朴趾源, 『燕巖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DB).

王肅, 『家語』(文淵閣四庫全書).

魏堂, 『家禮會成』(국립중앙도서관, 1557).

劉在建, 『里鄕見聞錄』(李朝後期 閭巷文學叢書 9).

柳馨遠, 『東國輿地志』(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李慶民, 『熙朝軼事』(李朝後期 閭巷文學叢書 9).

李睟光, 『芝峯類說』(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李瀷, 『星湖全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李重煥, 『擇里志』(乙酉文化史, 1973).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DB).

趙秀三, 『秋齋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趙熙龍, 『壺山外史』(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朱熹, 『家禮』(대전 : 學民文化社, 2001).

陳澔, 『禮記集說』(文淵閣四庫全書).

『震彙續攷』(李朝後期 閭巷文學叢書 9).

何晏, 『論語注疏』(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00).

胡廣, 『禮記大全』(文淵閣四庫全書).

단행본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김혈조 외 著, 송병렬 외 譯, 『스스로 역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 진휘속고震彙續攷–』,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8.

박 주,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 국학자료원, 2000.

박 주,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1997.

楊志剛, 『中國礼儀制度研究』, 華東師范大學出版社, 2001.

王美華, 『礼制下移与唐宋社會變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劉永華, 『礼儀下鄉 – 明代以降閩西四保的礼儀變革与社會轉型–』,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9.

유재건 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이향견문록 – 이조시대 탁월한 서민들 이야기–』, 2008.

이경민 著, 노대환 외 譯, 『희조일사 – 조선의 역사를 빛낸 범상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서해문집, 2021.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 – 五禮를 中心으로 –』, 일조각, 1991.

임형택, 『李朝後期 閭巷文學叢書』 9, 驪江出版社, 1991.

정옥자, 『朝鮮後期文化運動史』, 일조각, 1988.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조 광,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특성』, 경인문화사, 2010.

조수삼 著, 안대회 譯, 『秋齋紀異 – 타고난 이야기꾼, 추재 조수삼이 들려주는 조선 후기 마이너리티들의 인생이야기–』, 한겨레출판, 2010.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研究 – 性理學 正統論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Yonghua Liu, Confucian rituals and chinese villagers, Brill, 2013.

Peter Kees Bol 著, 김영민 譯,『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논문

고영진,「朝鮮 中期 禮說과 禮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권기석,「『里鄕見聞錄』 수록 인물의 사회계층적 위상과 신분 관념」,『朝鮮時代史學報』 72, 2015.

김경숙,「16세기 사대부가의 喪祭禮와 廬墓生活 – 이문건의『默齋日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7, 2001.

김경숙,「17세기말 사대부가의 喪葬禮와 居喪生活 – 尹爾厚의『支菴日記』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172, 2016.

김경숙,「18세기말 順菴 安鼎福家의 喪葬禮와 居喪生活」,『古文書硏究』 50, 2017.

김문식,「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藏書閣』 21, 2009.

김진우,「조선 후기 사회 기본 구조의 특징과 그 의의 – 家, 宗, 族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2, 2019b.

김현우,「한국 효자전(孝子傳) 목록 작성 및 정량 분석」,『효학연구』 27, 2018.

박 주,「朝鮮初期의 旌表者에 대한 一考察 – 孝子·烈女를 中心으로 –」,『史學硏究』 37, 1983.

박 주,「16세기 旌表政策에 대한 硏究」,『韓國傳統文化硏究』 5, 1989.

박 주,「朝鮮時代 孝子에 대한 旌表政策」,『韓國思想史學』 10, 1998.

송재용,「『眉巖日記』에 나타난 민속 일고찰」,『동아시아고대학』 15, 2007.

송재용,「『慵齋叢話』에 나타난 民俗 硏究」,『東洋古典硏究』 38, 2010.

신진혜,「임진왜란기 張顯光(1554~1637)의 피난 중 喪·祭禮 시행양상」,『韓國實學硏究』 40, 2020.

신진혜,「임진왜란기 경상도지역 사족의 상, 제례 시행양상과 의미」,『국학연구』 47, 2020.

윤재민, 「中人, 平民, 委巷의 槪念 限界 – ‘中人文學’ 槪念의 設定을 위하여 –」, 『어문논집』 27, 1987.
이범직, 「朝鮮前期의 五禮와 家禮」, 『한국사연구』 71, 1990.
이봉규, 「유교적 질서의 재생산으로서 실학 – 반계와 성호의 경우 –」, 『哲學』 65, 2000.
이봉규, 「명청조와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시대 家禮 연구의 특색과 연구방향」, 『韓國思想史學』 44, 2013.
이봉규, 「이황의 『가례』 연구와 전승」, 『退溪學報』 147, 2020.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2021.
이석규, 「조선 전기 三年喪制의 확립과 民의 성장」, 『한국사연구』 161, 2013.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 동전東傳 판본板本 문제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16, 2010.
장동우,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2013.
장동우, 「朝鮮時代 『家禮』 硏究의 進展」, 『태동고전연구』 31, 2013.
전성건, 「순암 안정복의 『가례』 연구와 그 방향」, 『한국실학연구』 39, 2020.
정병호, 「〈里鄕見聞錄〉을 통해 본 朝鮮時代 閭巷人의 形象」, 『東方漢文學』 12, 1996.
정현정, 「조선(朝鮮)에서 「가례도(家禮圖)」이해의 흐름」, 『한국실학연구』 30, 2015.
허경진, 「19세기에 엮어진 세 권의 평민전기집」, 『淵民 李家源先生 七秩頌壽紀念論叢』, 정음사, 1987.